직원보수규정

시행일: 2023. 10. 06.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사 등) 기획조정처장은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기관의 임금, 타 대학의 보수, 표준 생계비,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행하며 차기 학년도의 보수안을 작성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본봉'이라 함은 임금지급표에 표시된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기본급료를 말하며, 임금지급표의 금액은 상여금, 자기계발수당, 정근수당을 포함한다.
 - 2. '봉급'이라 함은 본봉에 직위수당, 보직수당, 특수근무수당, 자격수당, 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3. '보수'라 함은 봉급에 제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4. '연급여총액'이라 함은 직원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총액을 말한다.
 - 5.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개월로 교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기타수당'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봉급을 제외한 각종수당(연장근로수당 포함)을 말한다.
 - 7. '봉급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봉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8. 보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9.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획정될 연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기획조정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6조(보수계산) ① 직원의 보수는 월 또는 회계연도를 단위로 계산한다.

②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감봉, 정직,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및 해당 월을 만근하지 않고 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 또는 수당의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직의 보임·해임의 경우에는 당월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7조(초임급 획정) 직원의 초임급은 「직원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제8조(호봉 재획정) 직원이 전보 등으로 인하여 호봉획정의 산정 기준을 달리하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행정직원인 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획정 한다.

제9조(겸직자의 수당) ①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때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기획조정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0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총장은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휴직 기간 중의 봉급)

- ①「직원임용규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휴직전월 봉급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휴직전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전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②「직원임용규정」제3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직원임용규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산정한 육 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직위해제 및 징계기간 중의 봉급) ① 「직원임용규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는 직위해제 직전 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징계기간 중의 보수지급은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감봉은 보수의 1할을 감액 지급하며, 견책은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 2 장 보직수당 및 기타수당

제13조(보직수당) 보직에 보임되었을 때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겸직자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특수근무수당) 총장이 특별히 수당을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 직종 또는 직무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수당, 조정수당) ① 자격수당은 기능직 직원이 해당 직무를 담당할 때에 지급하고, 조정수당은 해당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담당자 변경시 신구 담당자 모두 지급을 중지한다.

② 조정수당은 연봉계약 형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연장근로수당) 근무시간 종료 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위로금) 재직중인 직원이 질병이나 급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전 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직원명예퇴직규정」제10조(순직직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등 명예퇴직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 3 장 보칙

제1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행정직원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9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인사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1985.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6.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12.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7.9.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9.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 1. 본 규정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직원 보수규정을 폐지한다.